

# 심사 보고서

-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84
----------	-----

2016.11.30.(수)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1월 23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가. 제안이유

○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하여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  
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센터 행정지원 등을 규정
- 센터출연금 등 지원 및 연간운영·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규정
- 센터 업무·회계 등에 대한 조사·감독, 보고·관련 서류제출에 관한 규정

##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오성일)

-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다만, 센터 출범에 따른 분야별 창업현황, 공무원 파견현황과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1차년도 국도비 포함 28억 6천만원에서 2~5차년도의 경우 46억 7,5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비용이 증가한 이유와 1차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 론 요 지 : “없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지원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령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및 감독)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출연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및 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578호, 2015.12.22., 일부개정]

-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6.6.23.] 제16조의4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4호, 2016.6.30., 일부개정]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6.21.]

제24조의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5.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6.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8.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9.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1. 제24조의3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을 선임

2. 제24조의3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③ 시·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1.]

부 칙 <대통령령 제27231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4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자는 제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지역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출연금등의 지원)의 근거로 필요한 비용 발생

### 3. 관련조문

- 안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
- 나. 추계의 전제 : 인건비, 센터 운영(일반수용비, 회의운영수당, 센터임대료, 차량선박비, 여비, 시설장비유지비, 홍보비 등) 경비,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등
- 다. 추계 결과 : '16년~'20년까지 총 21,560,000천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60%, 도비 4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 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세 출	21,560,000	2,860,000	4,675,000	4,675,000	4,675,000	4,675,000
사업·운영· 인건비	국비	12,960,000	1,660,000	2,825,000	2,825,000	2,825,000
	도비	8,600,000	1,200,000	1,850,000	1,850,000	1,850,000

###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 이 두 표